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허2744 등록무효(디)

원 고 휴마시스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한국메디코

변 론 종 결 2016. 8. 1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16. 3. 22. 2014당324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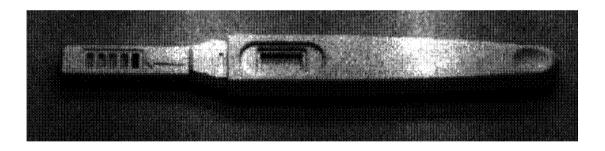
-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8. 14./ 2011. 7. 11./ 디자인등록 제605831호
- 2) 물품의 명칭: 의료용 진단기구
-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3(갑 제4호증의 1 내지 3)

피고가 2001년경부터 생산하여 판매한 의료용 진단기구(임신진단시험기)로 그 주 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2) 선행디자인 14(갑 제8호증)

2001. 10. 22. 발행된 약사공론에 게재된 '하이리스판스테스트' 광고문으로, 그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¹⁾ 원고는 이 사건 심판에서 선행디자인 1 내지 12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선행디자인 13, 14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 1 내지 12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선행디자인의 번호를 이 사건 심판에서 제시한 선행디자인 번호에 이어 선행디자인 13, 14로 부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내지 12와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 내지 1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 는 디자인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246호로 심리한 다음, 2016. 3.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3, 14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

선행디자인 13, 1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투시창이 '시에 '와 같이 타원형 내에 사각형의 내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위 차이점은 의료용 진단기구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 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3, 14와 각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68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김부한

판사 나상훈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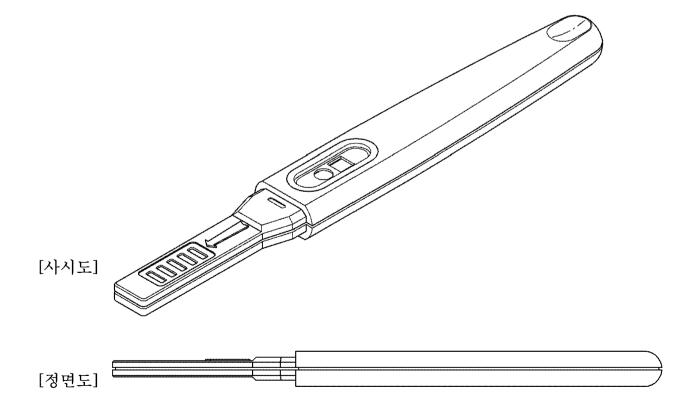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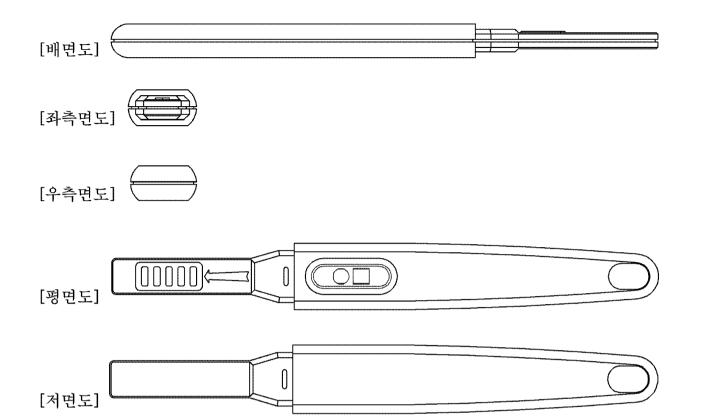
-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 2. 내부에 진단시약 또는 임신진단시약을 넣고, 하우징 일측에 다수 설치된 주입홈들을 통해 뇨를 주입하면, 하우징 중간에 위치한 길쭉한 투시창을 통해 보이는 시각적 표시의 조합으로써 진단결과를 확인하는 장치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사용 시에 뇨가 흡수된 부위가 눈에 잘 뜨이지 않게 하여 심미감을 주는 의료용 진단기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끝.